

■ 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3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 기간에 제2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규모별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- 다. 나목의 사업정지 기간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(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라.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 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.

2. 과징금 기준

등급	이산화탄소 저장규모	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 (단위: 만원)
1	50만톤 이하	5
2	50만톤 초과 100만톤 이하	8
3	100만톤 초과 300만톤 이하	10
4	300만톤 초과 500만톤 이하	13
5	500만톤 초과	16